

서울고등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20286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20286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19가합552068 판결

전문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유일

담당변호사 김상호

피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피항소인 1. D

피고, 피항소인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경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19가합552068 판결

변론종결 2024. 2. 27.

판결선고 2024. 4.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 수계에 따라 변경된 주위적예비적 청구 및 추가된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1)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중, 원고 B에게

147,901,489/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259,640,041/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8. 1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중, 원고 B에게 200,263,318/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351,560,866/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135,093,349/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8. 1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2 지분 중 135,093,349/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2019. 8. 1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019. 7. 11.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70%를, 피고들이 30%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1)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3/7 지분 비율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1. 접수 제98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3/7 지분 비율로,

피고 D에게 1/7 지분 비율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1. 접수 제98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9년 제235호 유언공정증서상의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2)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E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6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9년 제235호 유언공정증서상의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B, C과 피고 D은 G과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라 한다)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1) G은 1987. 9.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과 피고들 사이에 G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9. 1. 13.경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 합계 303,000,000원(= H은행 대출금채무 113,000,000원 + 상가 임대차보증금채무 70,000,000원 + 주택 임대차보증금채무 120,000,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하고,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G과 피고들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3) 피고 D은 2019. 1. 17. G의 대리인 자격으로 G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피고 E은 2019. 1. 21. G의 인감증명서, G과 피고 D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1. 접수 제9877호로 2019 1. 13.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G의 사망

G은 2016. 1.경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고, 협심증, 뇌경색, 간혈성 파행, 원발성 고혈압, 어지럼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 G은 2019. 1. 8.경 넘어진 후 허리통증으로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9. 1. 17.경에는 두통과 울렁거림으로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9. 1. 31.경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1. 사망하였다.

라. A의 유언공정증서 작성 및 사망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

1) A는 2019. 7. 11.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증서 2019년 제235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유증의 목적물 : 부동산 및 예금채권, 동산 등 전 재산

가. 부동산의 표시

- ① 토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J '대'
- ② 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K '3층 근린생활시설'
- ③ 토지 공유자 지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L '대'에 관한 상속분 또는 유류분 관련 재판 승소 시 공유자 지분
- ④ 건물 공유자 지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L '건물'에 관한 상속분 또는 유류분 관련 재판 승소 시 공유자 지분

나. 예금채권의 표시

예금주 A의 H은행 등 전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다. 동산의 표시

유언자 A의 소지품, 의류, 침구류 등 유품, 유물 일체

2. 유증의 내용

가. 유증자 A는, 본인 A 소유인 위 1. 기재 부동산과 부동산 공유자지분(그 반환청구권을 포함), 예금채권, 동산 및 이 유언 효력발생 전 위 예금의 일부나 전부를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 예치하거나 신규 개설, 증감 변동한 예금채권과 위 재산권의 매매, 재개발, 재건축 시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와, 화재, 공용수용, 기타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취득하는 대상청구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권에 관하여, 그중 위 1. 가. ①, ②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증자 B에게 70%, 수증자 C에게 30%씩의 비율로, 위 1. 가. ③, ④, 나. 다. 기재 등 나머지 재산권에 관하여는 수증자 B에게 전부를 포괄유증한다.

나. 위 유증을 받는 부담으로, 위 수증자들은 위 각자가 수증받는 비율에 따라 위 1. 가. 기재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각 변제하여야 한다.

2) A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3. 6. 18. 사망하였고, A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D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32, 33, 3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① 피고들이 2019. 1. 13. G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위조하여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이 그들의 계약상대방인 G을 대리하여 체결함으로써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며,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은 G의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D 및 A는 G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A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원고 B에게 유증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A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A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따라서 ①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피고 D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18 지분(= 피고 D 명의의 1/2 지분 - 피고 D의 상속분 2/9 지분)의 각 3/7 지분3)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1/7 지분4)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D은 위와 같이 피고 E으로부터 위 1/7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G의 공동상속인들인 A와 원고들의 유류분이 각 침해되었고, A가 이 사건 유언공증서에 따라 위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원고 B에게 유증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A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A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고유 유류분 및 위 소송절차의 수계에 따른 A의 유류분 부분을 포함하여,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 지분[= 원고들의 유류분 1/18(= 상속분 2/9 × 유류분 1/2 × 피고별 지분 1/2) + A의 유류분 1/36(= A의 유류분 1/12 × 상속분 1/3)]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② 피고 E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6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유언공증증서에 따른 유증에 따라 피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이 1/3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G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고, 자기계약이나 불공정행위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들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상속채무와 G의 생전증여로 인한 원고들의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거나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3,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190,000,000원

② 피고들이 G을 대신하여 납부한 소득세 합계 30,341,630원

- ③ G이 A에게 증여한 서울 관악구 J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J 상가'라고 한다)
- ④ A가 단독상속한 G의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 합계 74,284,544원
- ⑤ G이 199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B에게 증여한 유학자금
- ⑥ G이 2010. 5.경 및 2012. 5.경 원고 C에게 증여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합계 140,000,000원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과 A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A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원고 B에게 유증하였고, 이 법원에서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D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A의 유류분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종전 청구취지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의 수계에 따라 변경된 청구와 추가된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무효를 전제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도 원고들과 A의 유류분 침해를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당초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그 전제되는 청구원인 및 주장이 동일하다. 따라서 먼저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및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인정 여부에 따라 그 이행 범위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은 이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수계 및 이 사건 유증공정증서에 따른 유증 등을 원인으로 주위적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동일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며,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5)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4.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3행부터 11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나. 2) 나) (1) 이 사건 부동산 : 1,214,556,000원”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합계 1,553,757,522원6)

(가) 이 사건 부동산: 1,481,110,480원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G은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9. 1. 13. 피고 D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 특정하여 증여하였고, 각 증여가액은 아래에 보는 것과 같이 G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면, 위

각 증여는 피고 D에 대하여 생전증여에 의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E은 G의 공동상속인은 아니지만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M의 2024. 2. 21. 자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인 2019. 5.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1,784,110,480원(= 토지 1,637,962,000원 + 건물 146,148,480원)이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 합계 303,000,000원(= H은행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113,000,000원 + 상가 임대차보증금채무 70,000,000원 + 주택 임대차보증금채무 12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감정평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면, 피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가액은 1,481,110,480원(= 1,784,110,480원 - 303,000,000원)이 되므로, 피고들에게 증여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각 740,555,240원(= 1,481,110,480원 × 1/2)이다.

(나) N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담금 지원금: 72,647,042원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H은행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는 G이 대출받아 피고들의 아들인 N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계약금 및 분담금으로 지급해 준 것이므로, 이는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위 법리에 비추어 N의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담금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아들 N은 2017. 5.경 O 지역주택조합 아파트(P 아파트 Q호, 59㎡)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G은 피고들의 요청으로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계약금 및 분담금으로 2017. 5. 22. 35,000,000원을, 2017. 6. 23. 37,910,000원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의 계좌로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도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N의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계약금 및 분담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G은 N에게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계약금 및 분담금으로 합계 72,910,000원을 증여하였다(원고들은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모두 N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G이 위 72,910,000원을 초과하여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거나 이를 N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1993년 9월생으로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23세 남짓 되었고, 경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들과 그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G은 피고들로부터 위 분담금의 지급 요청을 받고 N의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계약금 및 분담금을 지급하게 된 점,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N의 위 분담금 등 지급을 위하여 증여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N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전부 증여된 점, 그 밖에 G과 N의 관계, 위 분담금 등의 증여 경위,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G이 N에게 증여한 위 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인 G으로부터 상속인인 피고 D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이 N의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담금 지급을 위해 증여한 위 돈은 피고 D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G이 N에게 증여한 위 돈을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인 2019년의 시가로 환산하면 72,647,042원7) 이다.】

○ 제1심판결 14쪽 아래에서 1행의 “원고 D”을 “피고 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쪽 14행부터 15쪽 글상자 <표3> 부분[“4. 나. 2) 나) (5)” 항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G이 피고 D의 아파트 매수자금 또는 담보대출금을 변제액: 산입하지 않음

원고들은, G이 피고들 명의로 매수한 서울 관악구 S아파트 T호(이하 'S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피고 D이 2009. 6. 9.경 S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G이 S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은 2009. 8. 2. S 아파트에 관하여 2009. 4.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G이 S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G이 피고 D의 S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9, 20,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09. 6. 9.경 H은행과 사이에 S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H은행으로부터 166,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19. 1. 28.에 이르러 31,8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 G은 2009. 11. 9.부터 2013. 1. 2.까지 아래 '<표3> 피고 D의 대출금 변제'의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각 입금액이 위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G은 피고 D을 위해 위 대출금 중 11,2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표3> 피고 D의 대출금 변제

날짜	입금액(원)	상속개시 당시 시가(원) (GDP 디플레이터 적용)	계좌번호
2009. 11. 9.	1,100,000	1,266,187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2009. 12. 9.	900,000	1,035,971	
2010. 2. 9.	1,000,000	1,120,000	
2011. 6. 29.	1,500,000	1,658,440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2012. 4. 17.	1,200,000	1,311,219	
2012. 9. 4.	1,500,000	1,639,024	
2012. 10. 15.	1,000,000	1,092,682	
2012. 11. 30.	1,500,000	1,639,024	
2013. 1. 2.	1,500,000	1,621,621	
합계		12,384,168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할 증거들만으로 G이 위 11,200,000원을 넘는 위 대출금 원리금 전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D이 위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9. 1.경에 이르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감소되었다거나 피고 D의 계좌에 A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G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G은 2009. 11. 9.부터 2013. 1. 2.까지 피고 D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11,2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입금기간과 횟수, 월 입금액이 900,000원 내지 1,500,000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상속인의 G의 생전의 자산 규모,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 형평을 고려하면, G이 피고 D에게 입금한 위 돈을 피고 D에게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6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G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G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9. 5. 2.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각 세금은 피상속인 G이 사망 당시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 사망 이후 부과된 조세여서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에 대한 위 각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5조 제2항8)에 따라 G의 사망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납부의무가 성립하지만, 위 각 세금은 G이 생전에 한 양도행위와 소득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피상속인인 G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가 된 것에 불과하고, 상속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승계받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 각 세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6쪽 6행부터 <표4>까지 부분[“나. 2) 라) 소결론”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합계(A)는 아래 '<표4>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재와 같이 합계 1,852,935,353원이다.

<표4>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구분		가액	비고
특별 수익	A	0	-
	원고 B	173,283,698	유학자금
	원고 C	81,951,219	임대차보증금
	피고 D	813,202,282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피고 E	740,555,240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상속 재산	적극재산	74,284,544	G의 예금 및 보험금
	소극재산	-30,341,630	G의 상속채무
합계		1,852,935,353	

)

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A는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과 피고 D는 G의 직계비속이므로, A의 유류분 비율은 $1/6 (= 3/9 \times 1/2)$ 이고, 원고들과 피고 D의 유류분 비율은 각 $1/9 (= 2/9 \times 1/2)$ 이다.

이에 따라 A, 원고들의 유류분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A의 유류분액은 308,822,558원, 원고 B, C과 피고 D의 유류분액은 205,881,705원이다.

[illegible]

[illegible]

2) 특별수익액(C)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 B의 특별수익액은 173,283,698원, 원고 C의 특별수익액은 81,951,219원, 피고 D의 특별수익액은 813,202,282원이다.

3) 순상속분액(D)

가) 관련법리

(1)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간주상속재산),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킨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3)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참조).

나) 구체적 산정

(1) 간주상속재산: 1,142,721,743원(= 적극적 상속재산 74,284,544원 + 원고 B의 특별수익 173,283,698원 + 원고 C의 특별수익 81,951,219원 + 피고 D의 특별수익 813,202,282원)

(2)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구체적 상속분

G의 공동상속인들인 A, 원고들 및 피고 D의 각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래 '〈표5〉 구체적 상속분액' 기재와 같다.

〈표5〉 구체적 상속분액 (단위: 원)

[illegible]

일치시키기 위하여 A의
법정상속분액을 1원
올린다. (③=①×②)

피고 D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고, 그 초과특별수익분의 합계액은 559,264,117원이므로,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A와 원고들)이 위 초과특별수익분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차 수정된

<표6>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액(1차 수정) (단위: 원)

상속인	구체적 상속분액(①)	안분대상 초과특별수익	법정상속 비율(②)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③=①×②)	1차 수정 구체적 상속분액 (①-③)
-----	----------------	----------------	---------------	--------------------------	----------------------------

A	380,907,248	559,264,117	3/7	239,684,621	141,222,627
원고 B	80,654,467		2/7	159,789,748	-79,135,281
원고 C	171,986,946		2/7	159,789,748	12,197,198

(4) 초과특별수익자(원고 B)의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수정(2차)

원고 B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고, 그 초과특별수익분의 합계액은 79,135,281원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들(A와 원고 C)이 위 초과특별수익분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차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래 '〈표7〉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액(2차 수정)' 기재와 같다.

〈표7〉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액(2차 수정) (단위: 원)

상속인	1차 수정 구체적 상속분액(①)	안분대상 특별초과수익	법정상속 비율(②)	초과특별수익 안분액(11)원 미만 버림. 다만 초과특별수익 안분액의 합계와 원고 B의 초과특별수익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A가 부담할 초과특별수익 안분액을 1원 올린다. (③=①×②)	2차 수정 구체적 상속분액 (①-③)						
A	141,222,627	79,135,281	3/5	47,481,169	93,741,458						
원고 C	12,197,198	2/5	31,654,112	-19,456,914							

(5) 초과특별수익자(원고 C)의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수정(3차)

원고 C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고, 그 초과특별수익분의 합계액은 19,456,914원이므로, 나머지 상속인 A가 위 초과특별수익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3차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래 '〈표8〉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액(3차 수정)' 기재와 같다.

<표8>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액(3차 수정) (단위: 원)

상속인	2차 수정 구체적 상속분액(①)	안분대상 특별초과수익	법정상속 비율(②)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③=①×②)	3차 수정 구체적 상속분액 (①-③)
A	93,741,458	19,456,914	1	19,456,914	74,284,544

(6) 순상속분액(D)

(가)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A는 G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G의 상속재산인 예금 및 보험금 74,284,544원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G은 사망 당시 30,341,630원의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는 A가 10,113,878원(= 30,341,630원 x 3/9)12) 원고들과 피고 D이 각 6,742,584원(= 30,341,630원 x 2/9)이다.

(나)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에서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한 순상속분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9〉 순상속분액' 기재와 같다.

<표9> 순상속분액

상속인	예금 및 보험금 (상속재산분할협의)(①)	상속채무 분담액(②)	순상속분액 [③=(①-②)]
A	74,284,544	10,113,878	64,170,666
원고 B	0	6,742,584	-6,742,584
원고 C	0	6,742,584	-6,742,584
피고 D	0	6,742,584	-6,742,584
합계	74,284,544	30,341,630	

(다) 원고들은, 구체적 상속분액 계산은 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A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받은 금액은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예금
및 보험금 74,284,544원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상속법관계의 형성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그 분할에 따른 법률관계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됨을 의미하므로, 상속인들은 협의분할한 당해 상속재산을 그 분할
내용대로 처음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해 직접 취득하는 것이 된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인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실제로 확정적으로
얻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 권리자가 부당하게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유류분 부족액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공동상속인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10〉 유류분 부족액' 기재와 같다.136의 공동상속인들인 A와 원고들은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은 피고 D와 수증자로서 증여를 받은 피고 E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표10> 유류분 부족액 (단위: 원)

상속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유류분 비율(B)	유류분액 (A×B)	특별수익액 (C)	순상속분액 (D)	유류분 부족액 [(A×B)-C-D]
A	1,852,935,353	1/6	308,822,558	0	64,170,666	244,651,892
원고 B		1/9	205,881,705	173,283,698	-6,742,584	39,340,591
원고 C		1/9	205,881,705	81,951,219	-6,742,584	130,673,070
피고 D		1/9	205,881,705	813,202,282	-6,742,584	-600,577,993

마.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1) 반환방법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들이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2) 반환범위

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또한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아 각 수증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증재산의 가액(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한편,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만으로 유류분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는 각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반환의 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반환 분담비율을 계산하면, 피고들은 A, 원고 B, C에게 아래 '〈표11〉 유류분반환 분담비율' 기재의 각 비율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표11〉 유류분반환 분담비율

[illegible]

다) 위 각 유류분반환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A, 원고 B,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12〉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액' 기재와 같다.

〈표12〉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액

[illegible]

원고 C	58,517,230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 $130,673,070 \times$ 피고 D의 분담비율 0.447814																	
피고 E	A	135,093,349	A의 유류분 부족액 $244,651,892 \times$ 피고 E의 분담비율 0.552186																
원고 B	21,723,323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 $39,340,591 \times$ 피고 E의 분담비율 0.552186																	
원고 C	72,155,839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 $130,673,070 \times$ 피고 E의 분담비율 0.552186																	

라) 피고 D의 유류분반환 범위16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D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외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금전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권리자인 A와 원고들에게 '〈표12〉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액'의 각 반환액에 대하여 각 수증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D이 수증재산의 총가액 중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반환 분담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13〉 피고 D의 수증재산별 분담액' 기재와 같고, 피고 D이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740,555,240원(= 1,481,110,480원 $\times$ 1/2)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표13> 피고 D의 수증재산별 분담액

반환 상대방	피고 D의 수증재산	분담액(원)	계산식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유류분 × 수증재산별 가액비율)
A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	99,771,181	A에게 반환할 유류분 109,558,542 × 피고 D이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1/2지분) 가액 740,555,240 / 수증재산 합계 813,202,282(=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740,555,240 + 분담금 지원금 72,647,042)
원고 B		16,043,436	원고 B에게 반환할 유류분 17,617,267 × 740,555,240 / 813,202,282
원고 C		53,289,620	원고 C에게 반환할 유류분 58,517,230 × 740,555,240 / 813,202,282

따라서 피고 D은 G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① A에게 99,771,181/740,555,240 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99,771,181/1,481,110,480 지분 상당)에 관하여, ②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16,043,436/740,555,240 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16,043,436/1,481,110,480 지분 상당)에 관하여, ③ 원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53,289,620/740,555,240 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53,289,620/1,481,110,480 지분 상당)에 관하여 각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8. 1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E의 유류분 반환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E도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권리자인 A와 원고들에게 '〈표12〉 유류분반환액' 기재 반환액에 대하여 수증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E이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740,555,240원이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① A에게 135,093,349/740,555,240 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135,093,349/1,481,110,480 지분 상당)에 관하여, ② 원고 B에게 21,723,323/740,555,240 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21,723,323/1,481,110,480 지분 상당)에 관하여, ③ 원고 C에게 72,155,839/740,555,240 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72,155,839/1,481,110,480 지분 상당)에 관하여 각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8. 1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바) 한편 A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D이그 재산을 각 1/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A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분에 관하여 그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원고들은 피고 D의 A에 대한 유류분 중 피고 D이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대립구조의 소멸로 소송이 당연종료되었음을 들어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피고 E은 A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분에 관하여 그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과 피고 D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 중 원고들 고유의 유류분 부분과 소송절차 수계에 따라 원고들이 A의 유류분을 승계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범위를 계산하면, '아래 <표14> A 사망으로 인한 유류분 반환범위' 기재와 같다.

<표14> A 사망으로 인한 유류분 반환범위

반환 의무자	상속인	상속인들 고유의 유류분(①)	A 유류분 상속분(각 1/3지분)(②)	유류분반환 범위 [①+②]
피고 D	A	$\frac{99,771,181}{740,555,240}$		
	원고 B	$\frac{16,043,436}{740,555,240}$	$\frac{99,771,181}{2,221,665,720}$	$\frac{147,901,489}{2,221,665,720}$

	원고 C	$\frac{53,289,620}{740,555,240}$	$\frac{99,771,181}{2,221,665,720}$	$\frac{259,640,041}{2,221,665,720}$
	피고 D	0	$\frac{99,771,181}{2,221,665,720}$	(청구하지 않음)
피고 E	A	$\frac{135,093,349}{740,555,240}$		
	원고 B	$\frac{21,723,323}{740,555,240}$		
	원고 C	$\frac{72,155,839}{740,555,240}$	$\frac{135,093,349}{2,221,665,720}$	$\frac{351,560,866}{2,221,665,720}$
	피고 D	0	$\frac{135,093,349}{2,221,665,720}$	$\frac{135,093,349}{2,221,665,720}$

3) 소결론

따라서 ①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B에게 $147,901,489/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C에게 $259,640,041/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B에게 $200,263,318/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C에게 $351,560,866/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8. 14.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③ 피고 E은 A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135,093,349/2,221,665,720$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8. 14.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참조),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A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행사한 이상,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은 자신의 고유한 유류분 외에도 A의 유류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피고 E은 원고들과 피고 D에게 위 A의 유류분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바.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A는 2019. 7. 11.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원고 B에게 특정유증하였고, 2023. 6. 18.에 이르러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은 A의 사망으로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D에게 위와 같이 피고 E으로부터 반환받는 위 A의 유류분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특정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135,093,349/2,221,665,72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다음, 원고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 수계에 따라 변경된 주위적예비적 청구 및 추가된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수계에 따라 변경된 주위적예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1. 서울 관악구 L 대 160.9㎡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 지하 1층 111.06㎡ 점포
- 1층 79.92㎡ 소매점
- 2층 및 3층 79.92㎡ 주택
- 끝.

1)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들은 제1심 공동원고인 망 A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면서 그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일부 변경하였고, 원고 B은 망 A의 2019. 7. 11. 자 유언공증증서에 따른 특정유증을 전제로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2)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 또는 1/36 지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각 증여받았고, 예비적 청구원인에서도 이를 전제로 피고들의 수증재산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취지는 피고들의 수증재산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중 1/6 지분 또는 1/18 지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이고,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이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지분 비율의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유류분의 반환범위 및 이행의무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기준으로 정한다.

3)피고 D을 제외한 원고들과 A의 상속분 중 원고들의 상속분(각 2/7 지분)과 A의 상속분(3/7 지분)

중 원고들이 상속받은 지분(각 1/7 지분)을 합한 것이다.

4)A의 상속분(3/7 지분) 중 피고 D이 상속받은 지분(1/7 지분)을 의미한다.

5)이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 D에 대한 증여액 813,202,282원(=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740,555,240원 + N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담금 72,647,042원) + 피고 E에 대한 증여액(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740,555,240원

7)= 72,910,000원 × (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3.877 / 특별수익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253), 원 미만 버림

8)○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 ·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9)원 미만 버림.

10)원 미만 버림. 다만 법정상속분액 합계와 간주상속재산 합계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A의 법정상속분액을 1원 올린다.

11)원 미만 버림. 다만 초과특별수익 안분액의 합계와 원고 B의 초과특별수익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A가 부담할 초과특별수익 안분액을 1원 올린다.

12)원 미만 버림, 다만 상속채무 분담액의 합계와 상속채무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A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1원 올린다.

13)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14)소수점 여섯째자리 미만 버림, 다만 분담비율 합계를 1로 맞추기 위하여 피고 D의 분담비율을 0.000001 올린다.

15)원 미만 버림

16)원고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유류분 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들이 G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 중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 할 유류분의 반환범위와 이행의무의 범위는 피고들이 각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는 피고 E의 유류분 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